# 부산경총 『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협의회』 추진 계획(안)

## □ 추진 배경

### ○ 한국노총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'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' 출범('23. 2. 23.)

- 외국인이 근로를 하면서 다양한 언어, 문화, 법률,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일이 없도록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 목적

### ○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 지속

- 지역 노동시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**'24년 16만 5천명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**[1)]

< 업종별 '24년 E-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계획 >

| 합 계 | 제조업 | 조선업 | 농축산업 | 어업 | 건설업 | 서비스업 | 탄력배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5,000명 | 95,000명 | 5,000명 | 16,000명 | 10,000명 | 6,000명 | 13,000명 | 20,000명 |

-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, 도입업종 확대[2)], **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** 실시

### ○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('23. 12. 29.) 결과

-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·**부산**·강원·제주에 위치한 **호텔·콘도 업체(호스텔 포함)의 청소원,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(E-9) 고용 시범 도입**→추가 확대 검토

- '타지키스탄'을 17번째 고용허가제(E-9) 송출국[3)]으로 지정, '25년부터 도입

### ○ 비전문 외국인력(E-9) 특화훈련 확대

-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·언어 · 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 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함

- '23년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, **'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,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 예정**

---

1) E-9 도입규모(만명) : ('21) 5.2 → ('22) 6.9 → ('23) 12 → ('24) 16.5

2) 서비스업 내 6개(택배업, 공항 지상조업, 신선식품도매업 등) 업종의 상·하차 직종(1월·9월) +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('23.9.) E-9 고용 허용

3) 고용허가제 송출국(16개국) : 필리핀, 몽골, 스리랑카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, 방글라데시, 키르기스스탄, 동티모르, 네팔, 미얀마, 라오스

## □ 부산경총, 『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협의회』 개요

### ○ 목 적

- 지역의 청년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사용을 지원하고,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·사협력의 상생모델을 창출하기 위함

### ○ 개 요

- 참여 주체별 역할

| 구 분 | 주 요 역 할 |
|---|---|
| 부산경영자총협회 | - 협의회 사무국 운영<br>- 참여사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조사와 대정부 건의<br>- 정기적인 회원사 외국인 근로자 수요 파악과 공표<br>- 국내 적응을 위한 직무와 한국어 등 훈련 및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회원사의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사용 지원<br>- 기타 참여사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대응 |
| 협의회 참여 기업 (참여사) | - 협의회 구성<br>-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한 조사와 대정부 대응을 위한 의견과 자료 제공<br>- 협의회 정기·비정기 회의 및 정부와 지자체 관련 회의 등 참석 |
| 전문가 위원 | -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편성<br>-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따른 노무, 안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<br>- 협의회 회의 참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|

### ○ 추진경과 및 계획

- ’23. 5. 서부산기계부품산업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업 기초조사
- **‘24. 4. ’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협의회‘ 구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**
- **’24. 5. ‘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협의회’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**
- **’24. 6. 협의회 출범 및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업 대상 FGI 실시, 보고서 발간 및 이를 기초로 한 대정부·지자체 기업 지원 정책 등 건의**

# [참고1] 2024년 일반 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허가 업종

| 구 분 | 일반고용허가제(E-9) |
|---|---|
| **제조업** | **-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**<br>※ 단,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<br>■ 중소기업 (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'중소기업확인서')<br>■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(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'뿌리기업 확인서'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'중견기업 확인서') |
| **건설업** | **- 모든 건설공사**<br>※ 발전소.제철소.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|
| **서비스업** | - 건설폐기물처리업(3823)<br>-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(46791)<br>- 냉장·냉동 창고업(52102) (내륙에 위치한 업체)<br>- **한식 음식점업(5611)**<br>※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'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' 또는 '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'에 한함<br>※ 표준직업분류상 '**주방 보조원(95220)**' 고용에 한함<br>**-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(581)**<br>-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(59201)<br>◈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(92101)<br>-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(38)<br>※ 단, 「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」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<br>-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(46102)<br>-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(46319)<br>- 택배업(49401)<br>-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(52939)<br>※「항공사업법」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<br>-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(52941)<br>※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|
| **농축산업** | - 작물재배업(011), 축산업(012),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(014) |
| **어업** | - 연근해어업(03112), 양식어업(0321),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(07220) |
| **임업** | **- 임업 종묘 생산업(02011), 육림업(02012), 벌목업(02020), 임업 관련 서비스업(02040)**<br>※ 위 업종 중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'산림사업시행업자' 중 법인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'종묘생산업자' 중 법인에 한함<br>※ 표준직업분류상 '**임업 단순 종사원(99102)**' 고용에 한함 |
| **광업** | **- 금속 광업(06), 비금속광물 광업(07)**<br>※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「광업법」 제3조제3·4호에 따른 '채굴권' 또는 '조광권'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<br>※ 표준직업분류상 '**광업 단순 종사원(91002)**' 고용에 한함 |

# (참고2) 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

## □ 광업 및 제조업(조선업 포함)

| 내국인 피보험자 수 | 고 용 한 도 |
|---|---|
| 1명 이상 10명 이하 | 내국인 피보험자수 + 10명 |
| 11명 이상 50명 이하 | 30명 (단,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) |
| 51명 이상 100명 이하 | 35명 |
| 101명 이상 150명 이하 | 40명 |
| 151명 이상 200명 이하 | 50명 |
| 201명 이상 300명 이하 | 60명 |
| 301명 이상 | 80명 |

※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(3개월 평균)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

※ 뿌리산업(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)은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%까지 추가 고용 허용

## □ 건설업

| 연평균 공사금액 | 고 용 한 도 |
|---|---|
| 15억원 미만 | 10명(계수 미적용) |
| 15억원 이상 | 공사금액 × 0.8 |

※ 공사금액 1억원당 0.8명 (소수점 이하는 내림)

## □ 서비스업

| 내국인 피보험자수 | 고 용 한 도 | |
|---|---|---|
| | 일 반 | 택 배 |
| 5명 이하 | 4명 | 12명 |
| 6명 이상 10명 이하 | 6명 | 18명 |
| 11명 이상 15명 이하 | 10명 | 30명 |
| 16명 이상 20명 이하 | 14명 | 42명 |
| 21명 이상 100명 이하 | 20명 | 60명 |
| 101명 이상 | 25명 | 75명 |

※ 개인 간병인,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

※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, 일반 외국인근로자(E-9)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(H-2)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

- **(E-9)** **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,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<한식 음식점 한정>**
- **(H-2)**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, **내국인 피보험자 수 6~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**

※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,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

※ 음식점업(한식) 외국인력(E-9) 허용 시범지역(동남권) : 부산광역시 16개구(중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부산진구, 동래구, 남구, 북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수영구, 사상구, 기장군), 울산광역시 5개구(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), 경상남도 창원, 김해, 진주